

2015년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계획(안)

엄정한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간부급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하여 간부직원의 청렴성 유지 및 위로부터 청렴의무 숭선수범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청렴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권익위) 공공기관청렴도측정 기본계획(2015.3.10) 및 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2015.1.30)

I.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권익위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개인별 청렴수준 외 직무수행능력 및 리더십, 부서별 청렴수준 추가 진단
- 사전안내 등을 통한 참여유도 및 진솔한 응답을 위한 결과의 비밀보장

□ 평가대상 : 총 100명(처장 21명, 팀장 58명, 현장소장 21명)

평가제외 대상자

- ①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는 이사장, 감사, 본부장(5명)
- ② 업무 직접 수행자(감사실장, 부패방지팀장, 경영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 ③ 평가단구성이 불가능한 보직자(서울도로공단설립추진단장, 팀장)
- ④ 부패위험성 진단이 적절치 않은 보직자(비서팀장) 제외

□ 평가시행 시기 및 방법

- 평가시행 시기 : 2015. 6월(평가기준일 : 2014. 4. 30)

☞ 평가대상 기간 : 2014. 5월 ~ 2015. 4월

- 평가단 구성 : 상위(20%), 동료(30%), 하위(50%)

☞ 피평가자와 3개월이상 동일부서 근무직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 평가대상자의 최근 1년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E-mail 설문평가 및 계량평가 ☞ 개량지표(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 부서별 근무기간(현부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단 구성비율 배분

2014년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결과

- 조사기간 : 2014. 6. 13 ~ 6. 23(20일간)
- 평가대상자 : 96명(처장 19명, 팀장 56명, 현장소장 21명)
- 평가자선정 : 최근 1년(2013. 5. 1 ~ 2014. 4. 30)간 해당 간부 직원과 3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부서의 상급·동급·하급자
 - 평가인원 : 총 1,920명 ※ 간부직원 1명당 평가단 20명 선정
 - 평가단 구성

구 분	計	평가 대상자별 분포비율		
		상위평가	동료평가	하위평가
직급별	-			
	100%	20%	30%	50%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
- 평가항목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모형’을 준용하여 공단 실정에 맞게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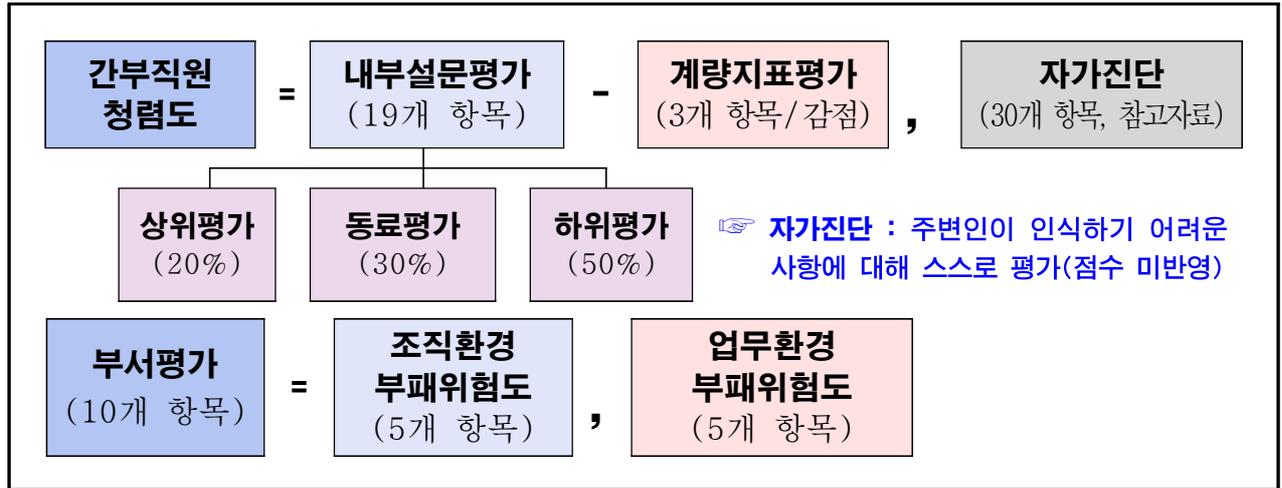
○ 평가결과(총괄)

(단위 : 점)

구 분	중 합 청렴도	직무 청렴성	공정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계량 평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014년	9.74	9.73	9.64	9.79	9.79	9.77	0.00 (0.004)
2013년	9.50	9.50	9.37	9.58	9.61	9.55	0.01
2012년	9.09	9.09	8.88	9.18	9.29	9.10	-

II. 세부 추진계획

1 평가체계



2 평가항목

□ **설문평가(19개 항목)** : E-mail 설문 (붙임 2-1 참조)

①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5개 항목)**

- 위법부당 업무지시, 알선·청탁, 연고중심, 인사업무 불공정성, 업무책임 회피·전가 및 복지부동 여부

② **부당이득 수수금지(6개 항목)**

- 금품수수, 향응·편의 수수,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직원 등 노동력 사적사용 여부

③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4개 항목)**

- 직위이용 순서끼어들기, 과도한 외부강의, 부적절한 출장, 근무 중 사적업무 여부

④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4개 항목)**

-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직원 등과의 부적절 금전관계, 청렴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 **계량평가(3개 항목)** : 구축된 계량점수 감점 적용(붙임 2-2 참조)

- 교통법규 위반실적(경찰서), 복무 및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실적, 청렴교육이수 또는 반부패활동실적
- 자료제출은 평가대상자가 직접 제출 또는 감사실에서 수집하여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30개 항목)** : E-mail 설문(붙임 2-3 참조)

- 본인 이외의 주변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지표를 스스로 진단하게 하여 자율관리 유도(평가점수에 미 반영)
- 평가항목 : 위장전입, 공기업 신분은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연말정산 허위 신고, 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저서 등 표절 등

□ **부서 평가(10개 항목)** : E-mail 설문(붙임 3-1·2 참조)

- 부서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및 전반적 청렴수준 인식,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구체적 개선사항 등

3

평가단 구성

- ❖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하며 각각 20%, 30%, 50% 가중치 적용
 - 상위평가단 구성 및 응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위평가단 가중치를 동료 및 하위평가단 가중치에 분배
 - 상위·동료평가단은 1인당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수조사 실시
 - 하위평가단은 피평가자별로 20명 이상의 Pool을 구성한 후, 그중 1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

❖ 평가대상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평가단 구성비율 세분화

평가대상자	평가단 구성 비율
현부서 3개월 이상 근무	현부서 직원 100%
현부서 3개월 미만 근무	현부서 직원 50%, 전부서 직원 50%

4

평가기관 선정

□ 선정기관 : 외부 전문리서치 업체 의뢰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계획」(총무처-4786호, 2015.02.16) 상의 수의계약 기준금액 완화 대상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 용역(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소요예산 : ○○,○○○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본부, 판매비와관리비,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5

추진일정

○ 평가방침 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 2015. 5. 26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구성 : 2015. 5. 30

○ 평가실시 : 2015. 6. 01 ~ 6. 19

○ 평가 결과보고 및 통보 : 2015. 6. 25

6

평가결과 활용방안

- 청렴도 개인별 평가결과를 피평가자 본인 및 이사장에게만 제공
 - 피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 부서별, 업무별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 부서별 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취약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노력 제고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집행 : ○○,○○○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본부, 판매비와관리비,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사전안내
 - 평가대상자 : 사전에 E-mail 등을 통해서 취지, 필요성, 보안 등 안내
 - ☞ 평가대상자 개인별 자료는 최대한 코드화하여 보안 관리 철저
 - 평가단 : 본인의 평가여부 및 결과는 외부기관에 의해 분석되므로 평가자의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는 점을 안내
- 부서별 협조사항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구성을 위한 자료 제출 : 인사처
 - 부서 직원에 대한 전화번호, E-mail 제출 : 전부서
-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관련부서간 협의 후 활용방안 도출
 - 간부직원 다면평가 항목(청렴성) 반영 또는 부서 BSC 지표 반영 여부 등

- 붙임 : 1. 청렴도 평가지표(총괄) 1부
2. 개인별 청렴도 평가(설문지, 계량지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각 1부
3. 부서별 청렴도 평가 설문지 1부. 끝.